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1. 6. 23(목)

건설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1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6월 15일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이 장 근)

가.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의 업무이관 · 조정에 관한 관계부처 합의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행정안전부

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이 정비되었고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중 자금의 용자 및 지원조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용자금 및 보조조건(안 제5조제3항)
  - 이율을 정하는 부처장관 변경(행정자치부→농림식품수산부)
  - 상환방법의 변경(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나 시 찬)

-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법령이 정비되었고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중 자금의 용자 및 지원조건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주택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체증상환”을 “분할상환”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 (용자 및 보조조건)</p> <p>① ~ ② (생략)</p> <p>③ 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이율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금리</p> <p>2.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u>체증</u> 상환</p>	<p>제5조 (용자 및 보조조건)</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용자금의 이율과 용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1. 이율 : <u>농림수산식품부장관</u>이 정하는 금리</p> <p>2.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u>분할</u> 상환</p>

<b>관련법령 발취</b>
----------------

## □ 농어촌정비법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 10호바목 및 자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이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0호자목의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2.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4. 제64조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 □ 2011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
  -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다만, 전원마을조성사업 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2. 지원형태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대출조건 : 금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개축 : 세대당 5,000만원 이내
- 부분개량·증축 : 세대당 2,500만원 이내